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328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33,274원 및 그 중 29,068,281원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2. 12. 26.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2. 21. 접수 제27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 및 피고 A가 피고 C과의 사이에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무자력이었던 사실인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상주시청,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2. 21. 접수 제27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 피고 A의 조상들 산소가 있는 곳이라 자식된 도리로 이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 C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